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중앙전파관리소

I-KOREA 4.0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18년 3분기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점검 실시

1. 관 련

가.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(기술기준) 및 동법 제43조(보고 · 검사 등)

나. 통신자원쟁책과-780(2013.7.23., 제3차 공중케이블정비 정책협의회 개최결과 통보)

2.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점검기간 : 2018. 9. 14. ~ 9. 28.(기간 중 4일)

나. 점검대상 : 붙임 참조

다. 점검내용

(1) 이용자 계약해지에 따른 공중케이블 철거여부(폐/사선정비)

(2) 인입선 설치의 적정성

(3) 공중케이블 관련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

3.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자는 해당구역 입회자를 아래 서식으로 2018. 9. 11.(화)까지 e-메일(meojjini@korea.kr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입회일자	구역명	사업자명	성명	전화(휴대전화)	비고

붙임 1. 2018년 3분기 현장점검 대상 지역 1부.

2. 공중케이블 현장점검표 1부. 끝.

중앙전파관리소장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(보도환경개선과장),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,한국전력,티브로드,딜라이브,드림라인,
세종텔레콤,KT,SKT,LGU+,SKB,CMB,CJ헬로비전,현대HCN

주무관 통신업무계장 전파보호과장

협조자

시행 전파보호과-3202 (2018.09.07.) 접수 보도환경개선과-10174 (2018.9.10.)

우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, 중앙전파관리소(가락동) / http://www.crms.go.kr
전화 02-3400-2336 /전송 02-3400-2329 / meojjini@korea.kr / 대시민공개

2018년 3분기 현장점검 대상 지역

구역명	점검 일시	전주 (본)	정비 거리 (m)	정비사업자	정비 년도	비고 (모임 장소)
강서구-1	9. 17. 14:00~	137	9,520	KT, **LGU+**, SKB, SKT 세종, 드림라인, 티브로드	'13	강서구 강서로 173 (신한은행 화곡점)
강서구-1	9. 18. 14:00~	318	6,965	KT, **LGU+**, SKT, SKB, 세종, 드림, 티브로드	'17	강서구 곰달래로 25길 45 (화곡8동주민센터)
서대문구-1	9. 19. 10:30~	136	2,872	KT, LGU+, SKT, **SKB** 세종, 딜라이브, 티브로드	'17	서대문구 연희로10길 21 (세이이용원 앞)
서대문구-2	9. 19. 13:30 ~	202	3,857	KT, LGU+, SKT, **SKB** 딜라이브, 티브로드	'17	서대문구 연희로10길 21 (세이이용원 앞)
도봉구-1	9. 20. 10:30~	44	2,060	KT, LGU+, SKB, **티브로드**	'17	도봉구 노해로 53길 205(르노삼성자동차 쌍문점)
도봉구-2	9. 20. 13:30~	87	2,554	KT, LGU+, SKB, **티브로드**	'17	도봉구 노해로 53길 205(르노삼성자동차 쌍문점)
계						

※ 대표사업자는 청색 굵은 글씨

<붙임 2>

공중케이블 정비구역 현장 점검표

1. 일반사항

점검일자	2018. 9. .	방송통신사업자	
점검지역			

2. 조사내용

점검항목		점검결과
규정	o 옥외회선 지하 인입여부(제18조2항) -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	
	o 인입선정비 미흡(제24조5항) - 인입점준수 -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 회선을 공중으로 인입시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 설치	
	o 이용계약 해지회선 철거여부(제24조6항) -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치된 옥외회선 철거 - 서비스 일부만 해지된 경우는 제외	
고시	o 가공 강전류 전선간 이격거리(제7조) -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저압: 30cm 이상 고압 강전류케이블: 30cm 이상 고압 기타 강전류전선: 60cm 이상	
	o 공중케이블지지물의 등주방지(제10조) - 발디딤쇠 등을 지표상 1.8m 이상	
	o 공중케이블의 높이(제11조) - 도로상에서는 노면에서 4.5m 이상 - 교통지장 등 없는 경우 보도상에서 3m 이상	
기타	o 공중케이블 표시(사업자별 식별표시)	
	o 기타 미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 - 여장말이, 늘어진 공중케이블, 무단설치 등	

※ 규정 :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※ 고시 : 접지설비·구내통신설비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(국립전파연구원)

점검자	중앙전파관리소 6급 신 장 환	확인자	